일본 가고시마현의 축산물 수급안정제도*

김 원 태

일본의 축산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고시마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축산업 수급안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기소 최대 주산지인 북해도의 사육규모는 53만 마리로 일본 전체 사육두수 292만 마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 미야자키 등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격안정대책, 생산확대장려사업, 사료가격 안정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축산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고시마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축산업 수급안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 축산현황

일본의 축산 주산지는 북단의 북해도와 남단의 큐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년 사육호수가 감소하는 반면 규모화의 진행에 따라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일본의 젖소 사육규모는 150만 마리로 그 중 55%인 82만 마리가 북해도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 뒤를 도치기, 이와테, 구마모토 등이 각각 3% 내외로 점유하고 있다. 경산우 마리수는 99만 마리이며 북해도가 49만 마리로 약 5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고기소는 화우, 홀스타인계열의 육우, 화우와 육우의 교잡종 등 3종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고기소 최대 주산지인 북해도의 사육규모는 53만 마리로 일본 전체 사육두수 292만 마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 미야자키 등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 본 내용은 일본출장에서 입수한 가고시마현 축산업 수급안정대책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wtkim@krei.re.kr, 02-3299-4245)

고기소 중 홀스타인계의 육우를 제외한 화우는 약 18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가고시마가 35만 마리(18%)로 최대 주산지이며 미야자키 28만 마리(14%), 북해도 19만 마리(10%) 등을 점유하고 있다. 화우 비육우는 81만 마리로 가고시마 13만 마리(16%), 미야자키 10만 마리(12%), 북해도 5만 마리(7%) 등이 사육되고 있다. 화우 번식암소는 68만 1천 마리로 가고시마 13만 5천 마리(20%), 미야자키 10만 5천 마리(16%), 북해도 7만 2천 마리(11%)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표 1 일본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전국	현별 순위					비고
		1위	2위	3위	4위	5위	
젖소 (마리)	1,500,000	북해도 823,200 (54.9)	도치기 55,900 (3.7)	이와테 47,700 (3.2)	구마모토 43,400 (2.9)	치바 41,100 (2.7)	가고시마(14위) 17,300 (1.2)
경산우	985,200	북해도 490,500 (49.8)	도치기 39,400 (4.0)	치바 31,500 (3.2)	구마모토 30,500 (3.1)	군마 29,900 (3.0)	가고시마(18위) 11,700 (1.2)
육용우 (마리)	2,923,000	북해도 534,900 (18.3)	가고시마 376,200 (12.9)	미야자키 297,900 (10.2)	구마모토 147,400 (5.0)	이와테 111,600 (3.8)	
육용종	1,889,000	가고시마 345,900 (18.3)	미야자키 257,500 (13.6)	북해도 185,900 (9.8)	구마모토 95,500 (5.1)	이와테 93,400 (4.9)	
비육우	809,900	가고시마 131,100 (16.2)	미야자키 95,500 (11.8)	북해도 53,700 (6.6)	사가 42,700 (5.3)	구마모토 39,100 (4.8)	교잡종 제외
번식 암소	681,200	가고시마 137,400 (19.8)	미야자키 105,300 (15.5)	북해도 72,200 (10.6)	오키나와 50,400 (7.4)	이와테 38,900 (5.7)	
돼지 (마리)	9,889,000	가고시마 1,340,000 (13.5)	미야자키 914,500 (9.4)	이바라키 659,200 (6.8)	치바 645,300 (6.6)	군마 619,400 (6.4)	
모돈	936,700	가고시마 140,400 (15.0)	미야자키 86,800 (9.3)	치바 64,700 (6.9)	이바라키 59,400 (6.3)	군마 53,600 (5.7)	
산란계 (천마리)	178,208	이바라키 12,598 (7.1)	치바 12,489 (7.0)	아이치 9,952 (5.6)	가고시마 9,665 (5.4)	히로시마 8,688 (4.9)	종계 제외
육계 (천마리)	107,141	가고시마 19,214 (17.9)	미야자키 18,388 (17.2)	이와테 15,409 (14.4)	아오모리 6,105 (5.7)	도쿠시마 4,466 (4.2)	

주: (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統計」 「食鳥流通統計」(2009년 2월 1일 현재).

돼지는 약 99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 134만 마리(14%), 미야자키 91만 마리(9%), 이바라키 66만 마리(7%), 치바 64만 마리(7%)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산란계는 1억 7,82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바라키 1,260만 마리(7%), 치바 1,250만 마리(7%), 아이치 995만 마리(6%), 가고시마 967만 마리(5%)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돼지는 약 99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 134만 마리(14%), 미야자키 91만 마리(9%), 이바라키 66만 마리(7%), 치바 64만 마리(7%)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모돈수는 약 94만 마리로 가고시마 14만 마리(15%), 미야자키 8만 7천 마리(9%), 치바 6만 5천 마리(7%) 등이 사육되고 있다.

산란계는 1억 7,82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바라키 1,260만 마리(7%), 치바 1,250만 마리(7%), 아이치 995만 마리(6%), 가고시마 967만 마리(5%)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육계는 1억 714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 1,921만 마리(18%), 미야자키 1,839만 마리(17%), 이와테 1,541만 마리(14%)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2007년 기준 일본의 우유 생산량은 8백만 톤 수준으로 대부분 북해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북해도의 우유 생산량은 379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치기 32만 톤(4%), 치바 28만 톤(4%)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표 2 일본 축산물 출하량(2007년)

	전국	현별 순위					비고
		1위	2위	3위	4위	5위	
우유 (kg)	8,007,417	북해도 3,794,892 (47.4)	도치기 324,123 (4.0)	치바 278,881 (3.5)	군마 278,566 (3.5)	구마모토 258,932 (3.2)	가고시마(18위) 93,540 (1.2)
육우 (마리)	1,198,906	북해도 238,127 (21.6)	가고시마 100,531 (8.4)	미야자키 79,193 (6.6)	구마모토 67,081 (5.6)	도치기 53,231 (4.4)	
화우	447,666	가고시마 76,932 (17.2)	미야자키 47,362 (10.6)	구마모토 25,323 (5.7)	사가 25,023 (5.6)	미야기 20,000 (4.5)	
거세우	247,205	가고시마 42,102 (17.0)	미야자키 24,726 (10.0)	구마모토 15,767 (6.4)	사가 14,936 (6.0)	미야기 11,758 (4.8)	
암소	199,916	가고시마 34,769 (17.4)	미야자키 22,616 (11.3)	야마가타 10,813 (5.4)	미에 10,276 (5.1)	사가 10,081 (5.0)	
돼지 (마리)	16,267,631	가고시마 1,871,834 (11.5)	미야자키 1,388,763 (8.5)	이바라키 1,181,425 (7.3)	군마 1,077,310 (6.6)	치바 1,040,347 (6.4)	
계란 (톤)	2,583,292	치바 183,034 (7.2)	이바라키 181,572 (7.0)	가고시마 166,792 (6.5)	아이치 137,368 (5.3)	히로시마 116,139 (4.5)	
육계 (만마리)	62,283	가고시마 11,994 (19.3)	미야자키 11,172 (17.9)	이와테 9,650 (15.5)	아오모리 3,764 (6.0)	북해도 2,978 (4.8)	

주: (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物流通統計」「鷄卵流通統計」「食鳥流通統計」「日刊酪農乳業速報 資料特集72」.

육용우 도축두수는 120만 마리로 북해도 24만 마리(22%), 가고시마 10만 마리(8%), 미야자키 8만 마리(7%) 등을 점유하고 있다. 육용우 중 화우 도축두수는 45만 마리로 가고시마 7만 7천 마리(17%), 미야자키 4만 7천 마리(11%), 구마모토 2만 5천 마리(6%) 등을 점유하고 있다. 거세우 도축두수는 24만 7천 마리로 가고시마 4만 2천 마리(17%), 미야자키 2만 4천 마리(10%), 구마모토 1만 6천 마리(6%) 등이 도축되었다. 암소 도축두수는 20만 마리로 가고시마 3만 5천 마리(17%), 미야자키 2만 3천 마리(11%), 야마가타 1만 1천 마리(5%) 순으로 도축되었다.

돼지는 1,627만 마리가 도축되었으며 가고시마 187만 마리(12%), 미야자키 139만 마리(9%), 이바라키 112만 마리(7%), 군마 108만 마리(7%) 순으로 출하되었다.

계란은 258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치바 18만 5천 톤(7%), 이바라키 18만 2천 톤(7%), 가고시마 16만 7천 톤(6%), 아이치 13만 7천 톤(5%) 등이 생산되었다. 육계는 6억 2,283만 마리가 출하되었으며 가고시마 1억 1,994만 마리(19%), 미야자키 1억 1,172만 마리(18%), 이와테 9,650만 마리(16%) 순으로 도계되었다.

2. 가고시마 축산현황

가고시마현은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사육규모가 일본 5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축산 주산지이다.

가고시마현은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사육규모가 일본 5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축산 주산지이다.

2009년 기준 가고시마현의 젖소 사육호수는 299호로 전년보다 26호(8%)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17,300마리로 전년보다 500마리(8%) 감소하였으나, 호당 사육두수는 57.9마리로 전년보다 3.1마리(5.6%) 증가하였다. 경산우 사육두수는 11,700마리로 전년보다 100마리(0.8%) 감소하였다.

육용우 사육호수는 1만 3,500호로 전년보다 600호(4.3%)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37만 6,200마리로 전년보다 8,900마리(2.4%) 증가하였다. 호당 사육두수는 27.9마리로 전년보다 1.9마리(6.0%) 증가하였다. 암소 사육두수는 13만 4,700마리로 전년보다 2,700마리(2.0%) 증가하였고, 화우 비육우는 13만 1,100마리로 전년보다 5,400마리(4.3%) 증가하였지만 육우 비육우는 3만 300마리로 전년보다 3,800마리(11.1%) 감소하였다.

돼지 사육호수는 810호로 전년보다 16호(1.9%)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134만 마리로 전년보다 8천 마리(0.6%) 증가하였다. 호당 사육두수는 1,654.3 마리로 전년보다 41.7 마리(2.6%) 증가하였다. 모돈수는 14만 400마리로 전년보다 1만 8,300마리(15.0%) 증가하였다.

산란계 사육호수는 162호로 전년보다 23호(12.4%) 감소하였고 사육수수는 966만 마리로 전년보다 79만 마리(4.6%) 감소하였다. 그러나 호당 사육수수는 5만 9,660 마리로 전년보다 4,892 마리(8.9%) 증가하였다.

육계 사육호수는 331호로 전년보다 14호(4.1%) 감소하였고 사육수수는 1,921만 마리로 전년보다 201만 마리(11.7%) 증가하였다. 호당 사육수수는 5만 8,048 마리로 전년보다 8,176 마리(16.4%) 증가하였다.

표 3 가고시마현 축종별 사육동향

단위: 젖소, 육용우: 마리, 돼지, 닭: 천 마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
젖소	사육호수	412	399	382	353	325	**299**	92.0
	사육두수	20,200	20,400	19,800	18,400	17,800	**17,300**	92.0
	경산우	13,000	13,000	12,900	12,300	11,800	**11,700**	99.2
	호당두수	49.0	51.1	51.8	52.1	54.8	**57.9**	105.6
육용우	사육호수	16,300	15,800	15,100	14,500	14,100	**13,500**	95.7
	사육두수	349,100	350,000	352,800	359,300	367,300	**376,200**	102.4
	번식암소	123,700	124,500	125,200	128,100	132,000	**134,700**	102.0
	화우비육	116,800	117,800	121,400	122,300	125,700	**131,100**	104.3
	육우비육	37,200	35,100	33,200	34,700	34,100	**30,300**	88.9
	호당두수	21.4	22.2	23.4	24.8	26.0	**27.9**	106.0
돼지	사육호수	982	947	926	883	826	**810**	98.1
	사육두수	1,378	1,398	1,396	1,385	1,332	**1,340**	100.6
	호당두수	1,403	1,476	1,508	1,569	1,613	**1,654**	102.6
산란계	사육호수	267	221	202	193	185	**162**	87.6
	사육수수	11,069	10,273	10,251	10,458	10,132	**9,665**	95.4
	호당수수	41,547	46,484	50,748	54,187	54,768	**59,660**	108.9
육계	사육호수	354	355	354	357	345	**331**	95.9
	사육수수	18,351	18,706	18,301	18,707	17,206	**19,214**	111.7
	호당수수	51,539	52,693	51,698	52,401	49,872	**58,048**	116.4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統計」 「食鳥流通統計」(2009년 2월 1일 현재).

2007년 기준 가고시마현 축산물 생산액은 2,343억엔으로 농업 총생산액 4,053억엔의 57.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기준 가고시마현 축산물 생산액은 2,343억엔으로 농업 총생산액 4,053억엔의 57.8%를 점유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육용우 생산액 816억엔(34.8%), 돼지 생산액 712억엔(30.4%), 육계 생산액 495억엔(21.1%), 계란 생산액 212억엔(9.0%), 젖소 생산액 90억엔(3.8%), 기타 16억엔(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고시마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3.1. 돼지가격안정대책사업

돼지가격안정대책사업은 일본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가고시마현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이 사업은 양돈경영에 있어 배합사료가격의 급등이나 급격한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될 경우 돼지가격차액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

로 (사) 가고시마 축산협회가 시행주체이다.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돼지 1마리당 320엔의 자조금을 적립하고 있다. 320엔은 국고보조금 80엔, 생산자적립금 180엔, 가고시마현 보조금 60엔으로 구성된다. 2009년 양돈농가의 돼지 계약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가고시마현의 가격안정사업 예산액은 9,605만엔이다. 가고시마현의 예산은 과거 5년간 모돈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출하두수를 예상한 뒤 농가와의 계약두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양돈경영에 있어 배합사료가격의 급등이나 급격한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될 경우 돼지가격차액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사) 가고시마 축산협회가 시행주체이다.

그림 1 2009년 가고시마현 돼지가격차 보정액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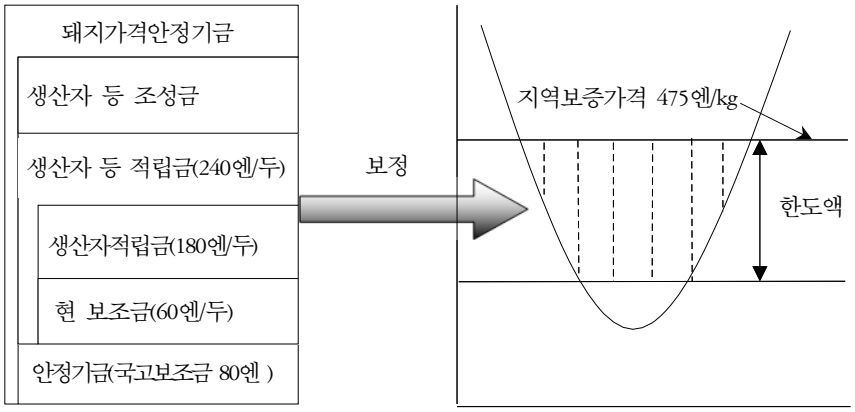

가격차보정에 관계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의 기준이 되는 지역보증가격은 2009년의 경우 1kg에 475엔으로 설정되어 2008년보다 10엔이 인상되었다.

한편 가고시마현 소재 3개의 식육센터에서 판매되는 육질 등급 「중」 이상의 가중평균가격을 사업시행의 지표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정액은 지표가격이 지역보증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지육중량을 곱한 액수로 결정되며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한도액 이내로 제한된다. 가격보정은 한도액 이내에서 매일의 가격차에 대한 보정액을 산출한 뒤 이를 월별로 통합하여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4 가고시마현 양돈 보증기준가격

단위: 엔/kg

	1992~1993	1994	1995~1996	1997~1999	2000	2001~2003	2004~2007	2008	2009
지역보증가격	405	405	385	385	385	385	385	465	475
한도액	15	10	35	50	35	①	②	③	④

① 4~9월 5엔, 10~12월 25엔, 1~3월 10엔.
② 4~9월 5엔, 10~12월 40엔, 1~3월 10엔.
③ 4~9월 10엔, 10~12월 45엔, 1~3월 15엔.
④ 일본 정부와 협의 중(4월 현재).

가격 하락 시 가고시마현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 10월 13일부로 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2008년 8월 1kg에 550엔이던 가고시마산 돼지 지육가격이 금년 9월에는 400엔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가고시마현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 10월 13일부로 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3.2.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

일본의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은 크게 전국적인 제도인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전일본난가안정기금과 가고시마현 사업인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전일본난가(卵価)안정기금

계란의 조정보관에 관한 사업은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가격차 보정에 대한 사업은 (사)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과 (사)전일본난가안정기금의 정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시행근거로 적용되고 있다.

계란의 조정보관에 관한 사업은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가격차 보정에 대한 사업은 (사)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과 (사)전일본난가안정기금의 정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시행근거로 적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농협연)에 의해 계란의 생산과 출하에 대한 전국적·계획적인 조정을 통해 계란가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계란생산자의 손실을 보정함으로써 계란 생산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산란계 농가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사업의 시행은 전농(全農)계열인 (사)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과 전계련(全鷄連)계열인 (사)전일본난가안정기금이 주관하고 있다.

계란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생산량 변동이 큰 폭의 가격변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생산구조에 있어서도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에 적합한 생산을 추진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을 시에 가격을 보정함으로서 산란계농가의 경영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표준거래가격은 농협연의 도쿄, 오사카에 있는 계란판매소 가운데 기금이 지정한 판매소 판매가격의 가중평균가격에 의해 산정된다. 산란계농가에게 지원되는 기준인 보정기준가격은 기금이 평의원회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되는데 2009년에는 1kg에 191엔으로 결정되었다. 보정단가는 보정기준가격과 표준거래가격의 차액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표 5 일본의 계란 보정기준가격 추이

단위: 엔/kg

1990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4~6월)	2008 (7월~2009 년까지)
160	163	159	163	162	166	185	191

2009년 기준 적립금은 통상적립금, 특별적립금, 별도납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상적립금은 1kg을 기준으로 생산자 4.00엔, 계약회원 1.75엔, 일본 정부 0.85엔 등 총 6.60엔으로 구성된다. 생산자 적립금 4.00엔 가운데 일부는 가고시마현이 보조하고 있다. 계란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 미래를 대비해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은 계란 가격이 1kg에 311~316엔 미만일 경우 1엔, 316~321엔 미만일 경우 2엔, 321~326엔 미만 3엔, 326~331엔 미만 4엔, 331엔 이상 5엔 규모로 적립하고 있다. 한편, 신규로 기금에 가입하는 생산자에게는 1kg에 4.60엔의 별도납부금을 거출하고 있다.

2) 가고시마현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

이 사업은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실시요령을 근거로 하여 전국 단위 계란가격안정사업의 생산자적립금 일부를 조성하여 양계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고시마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계)와 가고시마현 계란판매농업협동조합(전계련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9년 가고시마현 예산액은 2,827만엔으로 전국 단위 계란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kg당 0.253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단위 계란가격안정사업의 생산자적립금 일부를 조성하여 양계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고시마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계)와 가고시마현 계란판매농업협동조합(전계련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림 2 계란가격안정기금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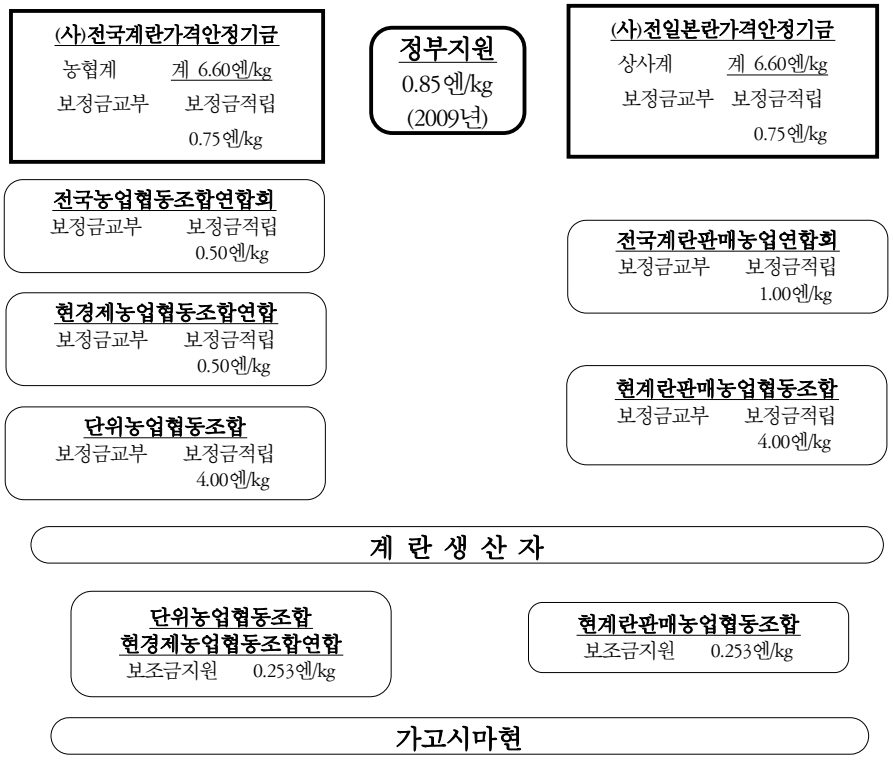

3.3.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은 육계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의 적립금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가 사업주체이며, 2009년 가고시마현 예산액은 1억 863만 엔이다.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은 육계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의 적립금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가 사업주체이며, 2009년 가고시마현 예산액은 1억 863만 엔이다.

축산협회는 계약출하조합과 육계가격차 보정에 관한 기본계약(3년간) 및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정적립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표준거래가격이 해당 분기의 보정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매일의 차액을 계약출하조합에 보전하고 있다.

그림 3 육계 가격안정대책사업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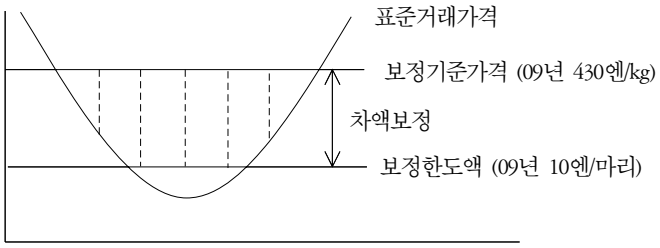

가격차보정에 관계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보정기준가격은 육계의 생산조건,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육계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격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때 기준가격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표준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육계의 부위별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고 있다. 부위별 가중치는 〔(다리살 도매가격×0.52)+(가슴살 도매가격×0.48)〕과 같이 정해져 있다.

가격차에 대한 보정액은 계약수량에 표준거래가격과 보정기준가격의 차에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표준거래가격의 추이 및 보정재원 등을 고려하여 보정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가격차에 대한 보정액은 계약수량에 표준거래가격과 보정기준가격의 차에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표준거래가격의 추이 및 보정재원 등을 고려하여 보정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적립금 부담액은 생산자가 육계 1마리당 1.17엔, 출하조합 1.17엔, 가고시마현 0.91엔 등 총 3.25엔을 적립하고 있다.

표 6 가고시마현 육계 보정가격 추이

단위: 엔/마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정기준가격	475	475	458	430	430	430	430
표준거래가격	453	433	443	420	489	506	–
보정한도액	8.5, 3[1)]	6.5	6.5	6, 2.3[2)]	6	10	10

주: 1) 2003년 보정한도액은 4~12월 8.5엔, 1~3월 3엔임. 2) 2006년 보정한도액은 4~7월 6엔, 8~3월 2.3엔임.

3.4.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는 1985년 12월에 제정된 「육용송아지 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육용송아지 생산자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등 육용송아지의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육용우 생산경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사업은 일본 주요 축산시장의 지정송아지 평균매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합리화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와 생산자보급금교부계약을 체결한 육용 송아지 생산자에게 당해 평균매매가격 산정기간 내에 판매하거나 보유한 육용 송아지 두수만큼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게 된다. 판매두수는 송아지시장 출하여부로 확인하며 보유는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보유 지속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지정시장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전국 108개 시장(가고시마현 14개 시장 포함)으로 한정하며, 송아지의 종류에 따라 흑모화우종 204~310kg, 홀스타인종 220~310kg, 교잡종 220~310kg을 지정송아지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매매가격은 농림수산성 관보에 고시된 품종별 전국지정시장의 월평균가격을 사용한다.

보증기준가격(육용송아지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은 정해진 가격으로 흑모화우종 310,000엔, 기타육우 204,000엔, 젖소 116,000엔, 교잡종 181,000엔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합리화목표가격(쇠고기 국제 가격동향, 육용우 사육비, 육용송아지 생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생산비를 기준)은 정해진 가격으로 흑모화우종 268,000엔, 기타육우 142,000엔, 젖소 83,000엔, 교잡종 138,000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급금의 재원조달방법으로 보증기준가격과 평균매매가격의 차액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합리화목표가격과 평균매매가격의 차액은 국고 1/2, 가고시마현 1/4, 생산자 1/4 등의 비율로 가고시마현 축산협회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흑모화우종 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290,000엔일 경우 지급되는 보급금은 보증기준가격인 310,000엔에서 평균매매가격인 290,000엔을 차감한 20,000엔이 지급되며, 평균매매가격이 250,000엔으로 합리화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보증기준가격 310,000엔과 합리화목표가격 268,000엔의 차액인 42,000엔과 합리화목표가격 268,000엔과 평균매매가격 250,000엔의 차액인 18,000엔의 90%인 16,200엔을 합산한 58,200엔을 보급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는 1985년 12월에 제정된 「육용송아지 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육용송아지의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육용우 생산경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증기준가격은 「육용송아지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정해진 가격이다

3.5.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사업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사업은 고기소의 번식경영에 있어 송아지의 생산 확대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번식암소두수의 유지·확대와 송아지 가격 하락시 번식암소 사육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사업은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사업실시요령에 근거하여 고기소의 번식경영에 있어 송아지의 생산 확대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번식암소두수의 유지·확대와 송아지 가격 하락시 번식암소 사육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송아지의 가격이 발동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고기소의 번식우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사육농가에 대해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송아지 1마리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교부하고 있다. 흑모화우종에 대해서는 송아지 가격이 발동기준가격보다 하락한 정도에 대응하여 32만에 이하까지는「확대」는 발동기준과 확대장려금을, 「유지」는 차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31만엔 이하일 경우는 발동기준과 그 차액 상당액을 교부한다. 이때 장려금 지급의 지표가 되는 송아지 가격은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에서 정해진 지정시장의 평균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표 7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금 내역

	발동기준	단가(송아지 1마리당)	
		사육두수 확대 (확대장려금)	사육두수 유지 (생산자장려금)
흑모화우종	35만 엔 이하	1만 엔	7천 엔
	34만 엔 이하	2만 엔	1만 5천 엔
	33만 엔 이하	3만 엔	2만 2천 엔
	32만 엔 이하	4만 엔	3만엔
	31만 엔 이하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로 대응	
갈모화우종	32만 엔 이하	2만 5천 엔	–
	29만 엔 이하		1만 6천 엔
기타 고기전용종	23만 엔 이하	1만 9천 엔	–
	21만 3천 엔 이하		1만 2천 엔

3.6. 비육농가에 대한 대책

일본은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분기별 소득이 가족노동비보다 낮을 경우 이를 보정해주는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マルキン)과 분기별 소득이 가족노동비를 제외한 생산비보다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정해주는 비육우생산자수익성 저하 긴급대책사업(보완マルキン)을 실시하고 있다.

1)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 (マルキン)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은 가고시마현내에 있는 비육우 생산자의 거출과

국가의 조성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가족노동비를 보상하여 육용우 비육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3년 단위로 업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금년은 제 3업무대상기간에 속해 있다.

이 사업은 가고시마현의 실태에 맞게 비육우보정금 및 생산자적립금 규모를 산정하고 생산자의 자조금 및 국가의 지원에 의해 기금을 조성한 후, 비육우 1마리당 분기별 평균추정소득이 보정금 지급기준 가족노동비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0%를 상한으로 계약생산자에게 비육우보정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정금 지급 발동기준인 가족노동비는 가고시마현 및 일본의 최근 3개년(제 2업무대상기간인 2006~2008년)의 평균 가족노동비를 적용하고 있다.

육용우비육경영 안정대책사업은 가고시마현내에 있는 비육우 생산자의 거출과 국가의 조성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가족노동비를 보상하여 육용우 비육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표 8 비육우 품종별 주요 지표

단위: 엔

	기준 가족노동비	보정금 최고액
화우종	74,422 (80,997)	59,500 (64,700)
젖소종	28,455 (32,445)	22,700 (25,900)
교잡종	41,310 (39,918)	33,000 (31,900)

주: ( )는 제 2업무대상 기간의 단가임.

표 9 비육우 경영안정기금 조성단가(2008년)

단위: 엔/마리

기금조성단가		흑모화우종	교잡종	젖소종
		38,400(35,600)	18,000→33,200(15,600)	21,200(23,600)
국가(중앙축산회) 3/4		28,800(26,700)	13,500→24,900(11,700)	15,900(17,700)
생산자적립금 1/4		9,600(8,900)	4,500→8,300(3,900)	5,300(5,900)
	생산자거출	8,900(8,010)	4,190→7,990(3,150)	4,840(5,310)
	가고시마현 조성	700(890)	310(390)	460(590)

주: 1) 교잡종은 7월 적립분부터 변경됨. 2) ( )는 제 2업무대상 기간의 단가임.

이 사업의 재원은 소의 품종별로 일정 액수를 생산자와 국가가 각각 1:3의 비율로 적립하여 충당하고 있다. 2008년 조성 단가는 흑모화우종 3만 8,400엔, 교잡종 33,200엔, 젖소 21,200엔 등이며 생산자적립금 일부는 가고시마현이 지원하고 있다.

비육우생산자 수익성저하 긴급대책사업은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부터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비육우생산자 수익성저하 긴급대책사업(보완マルキン)

비육우생산자 수익성저하 긴급대책사업은 비육우 1마리당 분기별 평균 추정소득이 기준 가족노동비를 제외한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그 차액의 60%를 생산자에게 보정해주는 사업으로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부터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림 4. 비육농가에 대한 대책사업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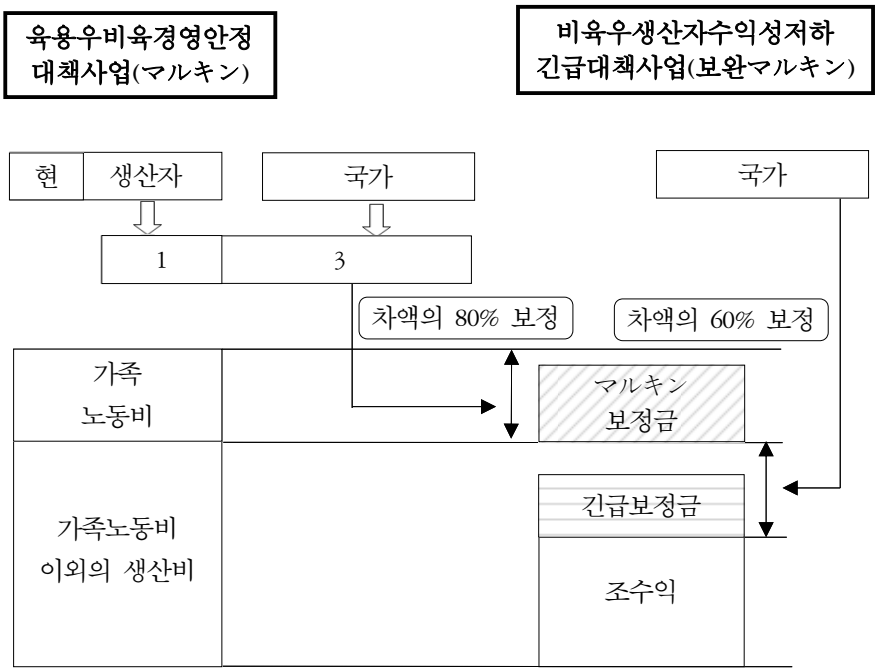

이 사업은 앞에서 소개한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이 가족노동비의 80% 수준까지 보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노동비를 제외한 생산비 이하로 조수익이 감소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방법이 없어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의 보완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일본 가고시마현청 축산과 자료, 2009.